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가축의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 등).
- 토종가축의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등).
-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21조 삭제).
-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 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
-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축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출입·점검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등).

Ⅱ. 검토의견

1. 시정명령 세부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명시 필요(안 제7조의2제3항, 안 제9조의2제5항, 안 제9조의3제3항)

- 안 제7조의2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는 검정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항제2호)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제5호) 지정취소·업무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의2제4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 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제4항제2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4항제3호)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의3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시설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제2항제2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제5호) 지정취소·업무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 제9조의2, 제9조의3은 각각 제3항, 제5항, 제3항에
검정기관, 토종가축 인정, 인정기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은 위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그런데, 「축산법」 제25조제4항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가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¹⁾

이와 같이 같은 법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시정명령의 침익적 성격을 감안할 때 법률 수범자인
국민 입장에서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각각의 조항에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의

1) 「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안 제7조의2제3항, 제9조의2제5항, 제9조의3제3항에 시정 명령의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7조의2 등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절차, <u>그 밖에</u>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③ ---- ----- ----- ----- <u>시정명</u> <u>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u> ----- ----- -----.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인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표시 <u>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⑤ ----- ----- ----- <u>방법, 시정</u> <u>명령의 구체적인 기준</u> ----- -----.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절차, <u>그 밖에</u>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③ ----- ----- ----- ----- <u>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u> ----- -----.

2. 압류재산 매각 근거 법률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추가 필요(안 제24조제2항)

- 안 제24조제2항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을 인수한 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각 호에서 인수의 절차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국세징수법」²⁾, 「관세법」³⁾, 「지방세징수법」⁴⁾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은 각각 국세, 관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따른 것으로 조세의 종류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의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안 24조 제2항제3호에서 각각 법률의 제명이 규정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등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⁵⁾을 체납하는 경우에도 압류재산 매각이 이루어지므로⁶⁾

2)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3)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4)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압류재산 매각의 근거 법률로 안 24조제2항제3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유사입법례⁷⁾에서도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이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도 영업시설 양수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24조제2항제3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의 근거 법률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24조제2항제3호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4조(영업의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의 승계) ② ----- ----- ----- ----- ----- ----- -----.

나. 그 밖의 조제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채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 7)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개 정 안	수 정 의 견
1. ~ 2. (생 략)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1. ~ 2. (생 략)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승계기간 기산점 명확화 필요(안 제24조 제7항)

- 안 제24조제7항 전단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설을 상속·양수 받거나 인수한 자 등(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와는 달리 처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기산점은 과징금의 납부를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처분일⁸⁾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보임.⁹⁾

8)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9)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제도개선권고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행정처분 승계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의 승계기간 기산점은 처분일임’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최근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04914호,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0조¹⁰⁾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효과가 승계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음.
-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처분 효과 승계기간 기산점을 부과 처분이 있는 날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24조제7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4조(영업의 승계)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u>날부터</u>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제24조(영업의 승계) ⑦ ----- ----- ----- ----- ----- ----- ----- <u>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u> ----- ----- -----.

‘제2023-612호 의결서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23, p.27.

1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 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기 도)